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9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학영 · 박희승 · 염태영
김주영 · 한민수 · 강준현
박민규 · 백선희 · 박정현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5(지역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제3항-----

-----.

제23조의5(지역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의 평가 등) ① 기후

<p>3. ~ 5. (생 략) ③ (생 략)</p>	<p><u>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u> <u>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u> <u>또는 기피한 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